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89
----------	------

제출일자 : 2024. 4. 2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자격 신설 및 장난감도서관 회원자격 확대에 관
내 영유아 보육 활성화 도모
-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반영

2. 주요내용

-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자격 신설(안 제26조)
- 다. 다자녀 기준 변경(안 제27조제3항제13호, 제33조제4항제5호)
- 라. 장난감도서관 회원자격 확대(안 제31조제2항)
- 마. 장난감도서관 대여기간 확대(안 별표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4. 3. 25. ~ 4. 15.)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제2항 단서 중 “소속지원으로”를 “소속직원으로”로 한다.

제26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회원)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3.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중전의 제26조)제3항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6조)제3항제9호 중 “「국국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6조)제3항제13호 중 “세자녀 이상 가정”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31조(중전의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회원등록 자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그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4항제5호 중 “세자녀 이상 가정”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4항제7호 중 “「북한이탈주민법」”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중전의 제36조) 중 “제29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중전의 제37조)제1항 중 “제29조제3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39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를 “제38조”로, “제29조제3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2조(중전의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를 “제41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33조제2항, 제34조 관련)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등록일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용시간	10:00 ~ 19:00	입·퇴관시간
이용료	무료	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 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14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 물품등의 배상 기준(제32조제2항 관련)

종류	구입 시기 등	배상금액
장난감 및 도서	3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8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70%
	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60%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50%
장난감관리봉투	대	1,000원
	중	500원
장난감 이음표	5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p> <p>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p> <p>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① ----- -----.</p> <p>1. ----- 7세 이하 ----- -----.</p> <p>2. ----- ----- ----- -----.</p> <p>3. -----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 -----.</p>
<p>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p>	<p>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p> <p>2. ----- 지원대상자 ---</p>
<p>제2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p> <p>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p> <p>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p> <p>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p> <p>4.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p> <p>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p> <p>6.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p> <p>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p> <p>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p> <p>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p>	<p>제22조(기능) -----.</p> <p>1. -----</p> <p>2. -----</p> <p>3. ----- -----</p> <p>4. ----- -----</p> <p>5. ----- -----</p> <p>6. ----- -----</p> <p>7. -----</p> <p>8. -----</p> <p>9. ----- -----</p> <p>10. ----- -----</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구성) ②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관의 대표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센터의 장 및 <u>소속지원</u>으로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 대표는 그 임면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3조(구성) ② ----- ----- ----- ----- ----- <u>소속직원</u> ----- . ----- ----- .</p>
<p><신설></p>	<p>제26조(회원)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3.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26조(시설 사용료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감면할 수 있다.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13. <u>세자녀 이상 가정 : 50%</u></p>	<p>제27조(시설 사용료 등) ③ ----- ----- ----- ----- ----- .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 ----- : --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p>

현행	개정안
제27조(정의) (생략)	제28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8조(명칭) (생략)	제29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9조(기능) (생략)	제30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30조(회원가입) ② 전항의 회원등록 자격은 <u>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영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장 등(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u>	제31조(회원가입) ② 전항의 회원등록 자격은 <u>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그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u>
제31조(회원의 의무) (생략)	제32조(회원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32조(연회비) ① 회원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5. <u>세 자녀 이상 가정</u> ... 7. 「 <u>북한이탈주민법</u>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3조(연회비) ① ----- 제31조제1항에 ----- ----- ... ④ ----- ----- ----- ... 5. 「 <u>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u> 」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 <u>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u> 」 -----
제3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생략)	제3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4조(이용제한) (생략)	제35조(이용제한) (현행과 같음)
제35조(관리·운영) (생략)	제36조(관리·운영) (현행과 같음)
제3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만료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3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36조제1항 ----- ----- ----- -----.
제3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및 위탁시설·물품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⑤ (생략)	제38조(수탁자의 의무) ① ----- 제36조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지휘·감독) (생략)	제39조(지휘·감독) (현행과 같음)
제39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지휘·감독의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생략)	제40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 ----- ----- ----- 제36조 ----- -----.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 ----- 3. 제38조----- ----- 제36조 ----- ----- 4. 제39조----- ----- 5. (현행과 같음)

제40조(비용의 보조) (생략)	제41조(비용의 보조) (현행과 같음)																																																																																										
<p>제41조(보조금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42조(보조금 등의 반환) ----- ----- 제41 조에 ----- -----.</p> <p>1. ~ 4. (현행과 같음)</p>																																																																																										
제42조(평가 및 포상) (생략)	제43조(평가 및 포상) (현행과 같음)																																																																																										
제43조(시행규칙) (생략)	제4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p>[별표 1]</p> <p>○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32조제2항, 제33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99 981 750 1388">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연회비</td> <td>일반회원 10,000원</td> <td rowspan="2">회원등록일부터 1년간</td> </tr> <tr> <td>시설회원 20,000원</td> </tr> <tr> <td>휴무일</td> <td>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td> <td></td> </tr> <tr> <td>이용시간</td> <td>10:00 ~ 19:00</td> <td>입·퇴관시간</td> </tr> <tr> <td>이용료</td> <td>무료</td> <td>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td> </tr> <tr> <td rowspan="2">대여수량</td> <td>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td> <td rowspan="2">1회 기준</td> </tr> <tr> <td>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서 최대5권</td> </tr> <tr> <td>대여기간 및 연장기간</td> <td colspan="2">7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td> </tr> </tbody> </table> <p>○물품등의 배상 기준(제31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99 1444 750 1736"> <thead> <tr> <th>종류</th> <th>구입 시기 등</th> <th>배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장난감 및 도서</td> <td>3개월 미만 전</td> <td>구입가격의 90%</td> </tr> <tr> <td>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td> <td>구입가격의 80%</td> </tr> <tr> <td>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td> <td>구입가격의 70%</td> </tr> <tr> <td>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td> <td>구입가격의 60%</td> </tr> <tr> <td>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td> <td>구입가격의 50%</td> </tr> <tr> <td rowspan="2">장난감관리봉투</td> <td>대</td> <td>1,000원</td> </tr> <tr> <td>중</td> <td>500원</td> </tr> <tr> <td>장난감 이름표</td> <td>50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등록일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용시간	10:00 ~ 19:00	입·퇴관시간	이용료	무료	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7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종류	구입 시기 등	배상금액	장난감 및 도서	3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8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70%	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60%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50%	장난감관리봉투	대	1,000원	중	500원	장난감 이름표	500원		<p>[별표 1]</p> <p>○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33조제2항, 제34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20 981 1370 1388">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연회비</td> <td>일반회원 10,000원</td> <td rowspan="2">회원등록일부터 1년간</td> </tr> <tr> <td>시설회원 20,000원</td> </tr> <tr> <td>휴무일</td> <td>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td> <td></td> </tr> <tr> <td>이용시간</td> <td>10:00 ~ 19:00</td> <td>입·퇴관시간</td> </tr> <tr> <td>이용료</td> <td>무료</td> <td>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td> </tr> <tr> <td rowspan="2">대여수량</td> <td>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td> <td rowspan="2">1회 기준</td> </tr> <tr> <td>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서 최대5권</td> </tr> <tr> <td>대여기간 및 연장기간</td> <td colspan="2">14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td> </tr> </tbody> </table> <p>○물품등의 배상 기준(제32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20 1444 1370 1736"> <thead> <tr> <th>종류</th> <th>구입 시기 등</th> <th>배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장난감 및 도서</td> <td>3개월 미만 전</td> <td>구입가격의 90%</td> </tr> <tr> <td>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td> <td>구입가격의 80%</td> </tr> <tr> <td>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td> <td>구입가격의 70%</td> </tr> <tr> <td>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td> <td>구입가격의 60%</td> </tr> <tr> <td>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td> <td>구입가격의 50%</td> </tr> <tr> <td rowspan="2">장난감관리봉투</td> <td>대</td> <td>1,000원</td> </tr> <tr> <td>중</td> <td>500원</td> </tr> <tr> <td>장난감 이름표</td> <td>50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등록일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용시간	10:00 ~ 19:00	입·퇴관시간	이용료	무료	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14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종류	구입 시기 등	배상금액	장난감 및 도서	3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8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70%	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60%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50%	장난감관리봉투	대	1,000원	중	500원	장난감 이름표	500원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등록일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용시간	10:00 ~ 19:00	입·퇴관시간																																																																																									
이용료	무료	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7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종류	구입 시기 등	배상금액																																																																																									
장난감 및 도서	3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8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70%																																																																																									
	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60%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50%																																																																																									
장난감관리봉투	대	1,000원																																																																																									
	중	500원																																																																																									
장난감 이름표	500원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등록일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용시간	10:00 ~ 19:00	입·퇴관시간																																																																																									
이용료	무료	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14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종류	구입 시기 등	배상금액																																																																																									
장난감 및 도서	3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8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70%																																																																																									
	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60%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50%																																																																																									
장난감관리봉투	대	1,000원																																																																																									
	중	500원																																																																																									
장난감 이름표	500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일: 2024. 8. 7.] 제2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2. ~ 5. (생략)

[시행일: 2023. 6. 30.]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가. 조례안 제27조제3항제13호 및 제33조제4항제5호
- 나. 조례안 제31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예산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가.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수입 감소
 -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수입 감소 : 약 12,000천원 / 연
 -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실 이용료 수입 감소 : 3,000천원 / 연
- 나. 장난감도서관 회원자격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
 - ※ 직장인 이용자 예측이 어려워 연회비 수입 증가분 산출 불가능

4. 작성자 : 교육정책과 보육팀장 김준홍

